

I. 서론

1. 연구 목적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 및 선점차원에서 개별기업특성에 부합한 연금제도의 설계¹⁾ 제시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특히 DB형 퇴직연금제도중심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제도의 비중 감소, 그리고 신규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유도 등이 향후 정부 정책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미국 등과 같은 연금재정평가체계²⁾의 구축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³⁾.

퇴직연금제도중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재정평가모델(모델의 특성분석)별로 기업의 부담능력 및 근로자의 속성 등을 고려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적절한 연금재정평가모델이 선택되도록 보험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제도설계(컨설팅)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금재정평가 적정성 모델에 관한 제반규정(재정방식의 설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는 제반규정 즉 과거 근무채무상각규정, 재정재계산 규정, 연금재정검증 규정 등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
- 1) 여기에서의 연금제도 설계의미는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금재정측면에서 적절한 재정검증모델을 자문해 주고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제도설계에 관해 컨설팅해 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2) 본고에서의 연금재정평가체계는 안정적인 연금재정을 위하여 관련제도 및 규정,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리스크측면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연금재정의 건전성 및 적정성과 관련된 체계로 정의하였다.
 - 3) 현재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수리적용 및 보험계리사의 활용 등 여러면에서 미국 등의 퇴직연금제도와 상이한 전환기적 퇴직연금제도(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가정한 사전적 준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정착차원에서 정형화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⁴⁾ 즉 연금재정평가와 관련된 제반규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도록 제정되고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금재정평가체계의 정형화는 향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성장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기업에 제도설계를 해주느냐는 컨설팅전략에 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⁵⁾. 그 이유는 기업의 재무부담 및 인구구조 등에 따라 기업마다 선호하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 선택이 상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연금재정 건전성평가관련 규정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제시함과 더불어 특히 퇴직연금 컨설팅차원에서 어떠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형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퇴직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형의 특징(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보고 연금재정의 평가체계를 크게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와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이를 선진국 연금재정의 평가체계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향후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
- 4)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은 확정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마련되어 있어도 법정퇴직금 존치하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특성상, 규정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5) 여기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은 연금수리적으로는 연금재정방식을 의미하며, 적정성이라는 의미는 평가모형에 의해 퇴직연금제정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성평가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 6) 미국 등에서는 연금재정방식에 의한 확정급여형 제도설계 다원화가 퇴직연금컨설팅의 주요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별에 따른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컨설팅전략차원에서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의 특징과 선택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연금재정의 평가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순재·이봉주·김현수·김재현(2005)⁷⁾의 연구와 류건식·이태열(2004)⁸⁾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순재·이봉주·김현수·김재현(2005)의 연구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연금지급보증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급보증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시기는 선호하는 연금플랜의 형태에 따라 정책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과 퇴직연금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국의 지급보증제도를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류건식·이태열의 연구 역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측면보다는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에 초점을 두고 연금지급상의 건전성 문제 등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언급하였다. 즉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책임준비금제도를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과 같은 연금지급급부공사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기철(2003)⁹⁾의 연구는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측면에서

7) 이순재·김재현·이봉주·김현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방안』, 노동부, 2005.3.

8)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7.

9) 신기철,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제고방안」, 『노동연구원 전문가포럼자료』, 2003.3.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 규제 및 감독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성주호(1998)¹⁰⁾의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재정을 계리적 접근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연금재정측면에서 대응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해외의 선행연구중에서 內藤修治(2000)¹¹⁾의 연구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측면에서 퇴직연금수리 모형특성의 특성과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연금수리 모형을 보험료수준정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보험수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田村正雄(1992)¹²⁾의 연구는 퇴직연금재정방식을 활용하여 민감도분석을 시안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다음으로 日本生命保險文化研究所(1999)¹³⁾의 논문은 후생연금기금의 전망을 재정방식에 의해 장기추계하고 있어, 가장 가까운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를 기초로 한 연구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 연구를 활용한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 분석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Helmut Reisen (1997)¹⁴⁾, N.G.Terry · P.J. White(1997)¹⁵⁾, Helmut Reisen (1997)의 연구가 있는데, 특히 Helmut Reisen (1997)에서는 연금재정의 문제를 연금투자 측면에서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Andrew H. Chen(1997)의 연구는 연금재정을 DC형 퇴직연금제도 중심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 DB형 퇴직연금제

10) 성주호,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6

11) 內藤修治, 『年金數理』, 日本保險計理士會, 1989.4

12) 田村正雄, 『年金財政』, 株式會社 社會保險廣報社, 1992.2.

13) 日本生命保險文化研究所, 『企業年金』, 1999, p. 80

14)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15)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도를 기초로 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매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Michal W. Peskin(1998)의 연구는 DB형 플랜을 자산배분 및 펀드의 정책적 측면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타 금융기관보다 보험회사가 특히 강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진출시 적절한 연금재정평가체계를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와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제로 양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상에 있는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 관련 제반규정 및 정책¹⁶⁾을 미국 등 선진국의 건전성관련규정 및 정책 등과 비교·검토하여 보고,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문제는 연금제도 도입시기에 한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변화의 특성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형 퇴직연금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는 기업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통제(risk control)개념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처럼 연금재정의 건전성규제의 성격, 즉 리스크재무(risk financing)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6) 2005년 10월 초순까지 구체적인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중인 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어떠한 연금재정 건전성 관련 규정 및 정책 등을 수립하느냐 여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 등을 기초로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규정 및 정책만을 발췌하여 이를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관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②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에서는 기업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재정방식 또는 연금수리모형)을 어떠한 기준하에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모델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을 보험회사의 컨설팅(제도설계)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사의 기업부담(보험료부담)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자산운용을 실시함으로써 어떻게 연금재정의 적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채무 개념보다는 리스크관리 개념과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는 기업특성에 맞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을 어떻게 설정하여 연금ALM관리¹⁷⁾를 도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금ALM관리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계산기초율의 설정과, 계산기초율하에서의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델의 선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계산기초율관련 규제,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 선택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의 기초가 되는 계산기초율관련 규정, 다양한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델 특성을 중심으로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은 퇴직연금제도의

17) 연금재정방식과 연금ALM관리는 연금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연금재정방식을 기초로 연금ALM관리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연금재정평가에 관한 이론적 접근으로 ① 퇴직연금재정평가의 개념 및 범주 ② 퇴직연금 재정평가의 단계 및 절차 ③ 퇴직연금재정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Ⅲ장은 퇴직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적정성평가모델을 재분류하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제3절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Ⅳ장은 퇴직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를 설명한 장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를 ① 연금재정의 검증측면, ② 과거근무채무(PSL) 상각 및 재정재계산측면, ③ 연금지급의 보증측면 등 건전성평가체계 ②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Ⅴ장 연금재정평가모델에 의한 시나리오분석에서는 가입연령방식, 도달연령방식, 폐쇄형종합보험료방식, 개방형종합보험료방식, 일시납적증방식 등 5개의 적정성평가모델을 통하여 기업의 재정부담, 연령대별 보험료수준 등을 분석하였으며, 보험회사 컨설팅전략차원에서 기업특성에 부합한 모델선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매크로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본방향하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 및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 방향성을 세부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반과제를 정리하였다.